

■ Legal Update ■

수정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ICA 홈페이지 게재

지평지성 미얀마팀

1. 수정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게재 현황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와 보장을 위한 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2012년 11월 2일 (신)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을 공포하고, 2013년 1월 31일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시행령(이하 '(구)시행령') 및 외국인투자의 금지 및 제한사항을 명시한 MIC 공고(Notification) 1/2013호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얀마 정부는 내부적으로 시행령의 일부 규정을 신설·수정·삭제한 후 이에 대한 별도의 고시 없이 수정된 시행령(이하 '(신)시행령')을 최종본으로하여 투자기업관리국(DICA)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2. 주요 수정 내용

(구)시행령과 비교하여 (신)시행령의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얀마투자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 관련

(신)시행령은 미얀마투자위원회(이하 'MIC')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MIC는 외국인투자자의 독점적 투자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신)시행령 제29조]. 나아가 MIC는 매 6월 연방의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방의회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이를 따라야 할 의무, 투자가 연방과 내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이를 연방정부를 거쳐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최되는 연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신)시행령 제176조 내지 제178조]

나. 노무 관련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미얀마 내국인 전문가, 숙련된 근로자 및 직원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이에 대해 (신)시행령은 MIC로 하여금 내국인 전문가, 내국인 기술자(technicians) 및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사업영역을 정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고할 것을 신설하고 있는 바[(신)시행령 제83조], 외국인투자자는 위 공고의 제정 및 공표 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시행령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저임금기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신)시행령 제82조 후단].

다. 투자금 송금 및 납입 관련

(구)시행령은 투자금 송금 및 납입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MIC에 대하여 (i) 총 외화 금액 중 매년 국내로 송금될 외화 금액을 할당하여 사전에 보고할 의무, (ii) 은행계좌 개설 후 1주 일 내에 계좌 관련 사항을 제출할 의무, (iii) 외국에서 미얀마 내 외국인투자자의 은행계좌로 추가 외국환 이체 시 고지할 의무, 추가송금계획 제출의무 등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구)시행령 제135조 내지 제142조]. 그런데 (신)시행령에서는 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금이 미얀마 국외 은행에서 이체 및 송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금 송금 및 납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송금 및 납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분쟁해결 관련

(신)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는 분쟁상황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신)시행령 제167조],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서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르되, 만일 계약에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신)시행령 제165조 및 제166조]. 또한 (신)시행령은 계약의 해석기준에 대해 신설하고, 미얀마어와 영문으로 체결된 계약의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얀마어 본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시행령 제180조]. 끝.